

의 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제 43호		
건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 안(출)자	서초구청장	제 안(출)년 월 일	1996. 2. 5
검토위원명	이 휘 남 전문위원	정재경	

1. 검토내용

가. 제정이유

- (1) 서울시가 '95.12.7자로 각구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예시하면서 이를 참고로하여 서울시의 주차정책과 구실정에 맞는 자치구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 (2) 우리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들을 규정한 서초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신규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3) 현재까지 관내의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서초구가 설치·관리해 오면서도 서울시 조례를 적용해 오던 것을 차제에 서초구조례로 제정하면서 서초구 실정도 반영하고자 한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안 제5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시간단위 주·야간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사항1]

- ① 여기에서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이라 함은 일반적인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현재 주택가 골목에 그어있는 무료의 주차구획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 주차구획선을 주차장으로 보아 그 구획별로 사용 차량을 지정하여 시간단위, 주·야간단위, 일·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주차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 ② 주차료는 별표1의 4급제 노상주차장의 요금을 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월 정기권 주간의 경우 4만원임)
- ③ 현재 서울시는 이 조문(안 제5조)과 주차료액수를 본 조례(안)과 같은 액수로 책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6.7.1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3월중에 조례를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함.
- (2)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3항)
- (3) 용자의 대상(안 제15조) 법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 (4) 법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할 주차요금은 아래 <별표1>과 같이 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초과		1일주	월 정기권	1 주 차		월 정기권	
	1구 획 최초 30분	1구 획 15분	1구 획 15분	차권(야간에 한함)	주 간	야 간	1구 획 최초 30분	1구 획 15분	주 간	야 간
1급지	2천원	1천원	2천원	5천원			1600원	800원	20만원	10만원
2급지	1천원	500원	1천원	4천원			1천원	500원	12만원	6만원
3급지	400원	200원		3천원	4만원		300원	150원	4만원	4만원
4급지	200원	100원		2천원	4만원	4만원	200원	100원	2만원	2만원

-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고사항2]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의미함.

- (5)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은 4급지의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1, 비교3 라의2)
- (6)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1, 비교3 마)
- (7)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시 주간 및 야간의 시간 구분, 야간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 비교4)
- (8)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시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비교5 및 7)
 - 10부제 운행 차량
 - 소형차동차 (800cc)
 - 출근시간대 3·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 (3인 이상 탑승한 자동차)
 - 기타 시장이 정한 교통수요정책 및 구청장이 도시교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해당 수첩 또는 증서를 소지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1 참고6)

(10)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내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아래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안 제8조 제1항)

<별표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8조제6항 관련)

급 지	최초 1시간	1시간 초과
1 급 지	1,000원	15분당 1,000원
2 급 지	500원	15분당 500원

다. 기타 검토사항

(1) 안 제5조에 관하여, 상기 주요골자(1) [참고사항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주택가도로의 주차장」 즉 「주택가 골목의 주차구획선」을 차량지정식으로 유료주차장화 한다면, ①새로운 주차요금 수입으로 인하여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야간만 실시할 경우 관내 주차구획선 약 1만6천개 × 대당 월 4만원 × 12월 = 약 76억 8천만원, 주야간 실시할 경우 약 153억6천만원) ② 골목내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소방차진입 곤란문제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오늘날까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내집앞 또는 내동네 주차공간인데 현재와 같이 폭 6m 정도의 협소한 골목에 주차구획선만 그어 주고 아무런 보호나 청소나 안내도 하지 않는 열악한 상태에서 유료화하는데 대하여 박탈감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않고,

②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여 주차구획별로 여기는 갑, 저기는 을 하는 식으로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면 지정받지 못한 병·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병이나 정이 갑·을의 주차구획선에 무단 주차한 경우의 관리는 (개정주차장법 제8조의2 제2항에 견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제2조에 규정된 4배의 가산금 부과는 현실성이 있는지 등등 너무나 많은 분쟁과 이로인한 민심의 이반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안 제5조와 같은 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서초구가 그 시행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과연 성북구 동선동 처럼 주민의 80%가 찬성하고 ('95.11.21 중앙일보) 시 관계자 말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차시비가 크게 줄어들어서 ('96.1.10 국민일보) 주민의 충체적인 복리증진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져보는 것은 물론 서울의 다른구와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인지 주차관리는 어떤 인력으로 할 것인지 등 정책 차원의 충분한 연구검토(관내 주택가 주차면적과 주차수요의 정확한 통계·여론조사·공청회 포함)가 선행되어야 하겠음.

- (2) 위에서 언급된 새로운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제도 도입과 '95.12.29 공포된 주차장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5115호로서 '96.7.1부터 시행)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3월중 시의회를 통과하여 '96.7.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므로, 서초구가 이번에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 한다 해도 4월 ~ 6월 사이의 기간중에 시조례에 상응하는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안)은 임시적 조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음.
- (3) 본 조례(안)의 구조를 살펴보면,
서울시조례의 구조도 그러하듯이 서초구가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업무에 관한 모든 규정이 체계적으로 나열·정리되어 있지 않고 산만한 행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사실상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본 조례(안)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과 「과징금·과태료 등 벌칙 규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구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적절한 시기에 해 나감으로써 누구나 구 조례 한가지만 보면 주차장 제도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조례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가) 부설주차장 관련 -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령 제6조, 제7조
서울시조례 제13조 ~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 조례(안)에는 제외되어 있음. 구가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리운영은 안하기 때문에 구조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나 사실상 구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앞으로 넘겨받아야 할 것임.
 (나) 벌칙조항 등 관련 - 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30조 령 제17조, 제19조,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조례나 구 조례(안)에는 제외되어 있음.

서울시조례 제24조에 따르면 필요한 조치의 명령, 노외주차장의 영업 정지 및 과정금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구가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내용도 구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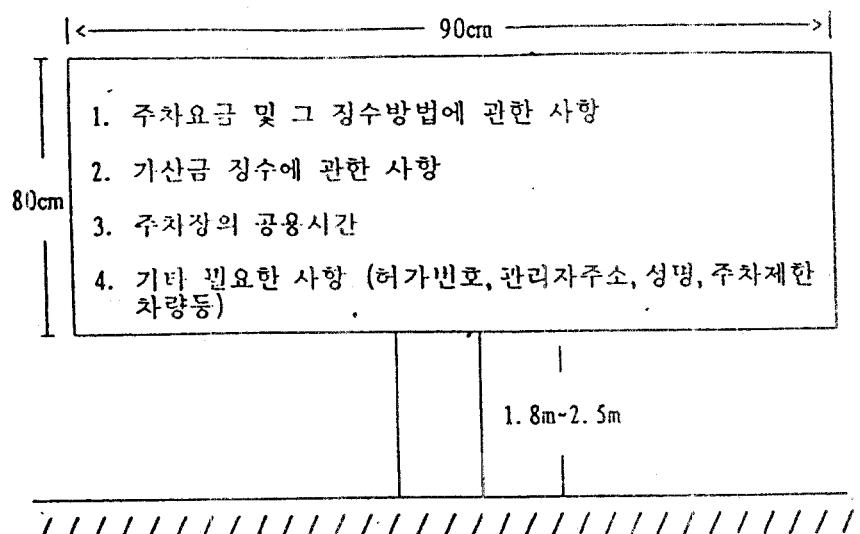
2. 검토결과

○ 검토의견

제출안(제정안)	검토안	비고
제3조(주차거부금지)-----	제3조(주차거부금지)-----	서울시 예시(안)
7. 이용시간이-----	7. 1회 이용시간이-----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② -----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② -----	서울시 예시(안)
3. 이용시간이-----	3. 1회 이용시간이-----	
제10조(주차장의 표시) ① ----- ② -----	제10조(주차장의 표시) ① ----- ② -----	서울시 예시(안)
3. 주차장의 사용시간-----	3. 주차장의 사용기간-----	
제14조(주차장의 표시)-----	제14조(주차장의 표지)-----	서울시 예시(안)
제15조(용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 -----	제15조(용자의 대상) 법 제21조 -----	항 번호(①) 삭제
제17조(용자금의 반환)-----	제17조(용자금의 반환)-----	서울시 예시(안)
1. 용자금의 목적외에 사용할 때-----	1. 용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	
<별표1>-----	<별표1>-----	자구 보충
3.----- 다. 3급지----- 환승기능이 전환된 -----	3.----- 다. 3급지----- 환승기능이 타기능으로 전환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서울시 예시(안)

[별지 제1호 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10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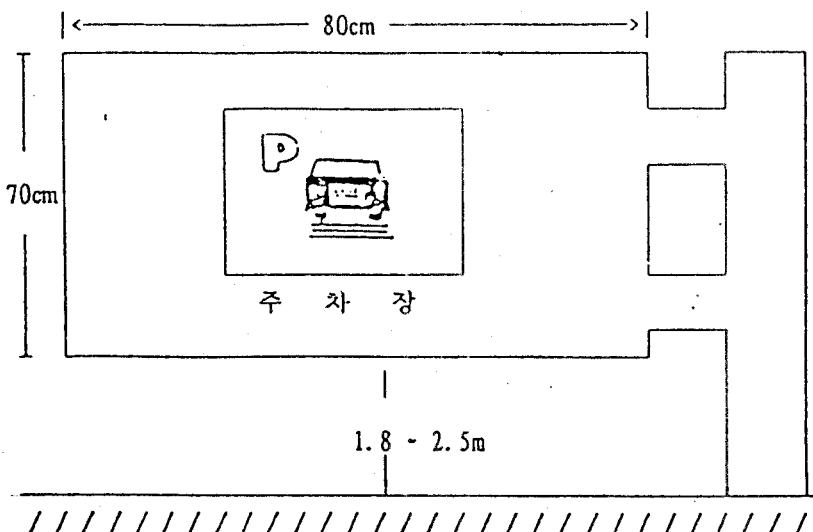


- 비 고 -

구 分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 (고 딕)
공영주차장	알루미늄 및 철판	녹 색	흰 색
민영주차장		청 색	흰 색

[별지 제2호 서식]

노외주차장표지 (제14조제1항 관련)



-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 탕 (청색)

- 문 자 (흰색)

내부표지판

- 바 탕 (흰색)

- 문자 및 기호 (청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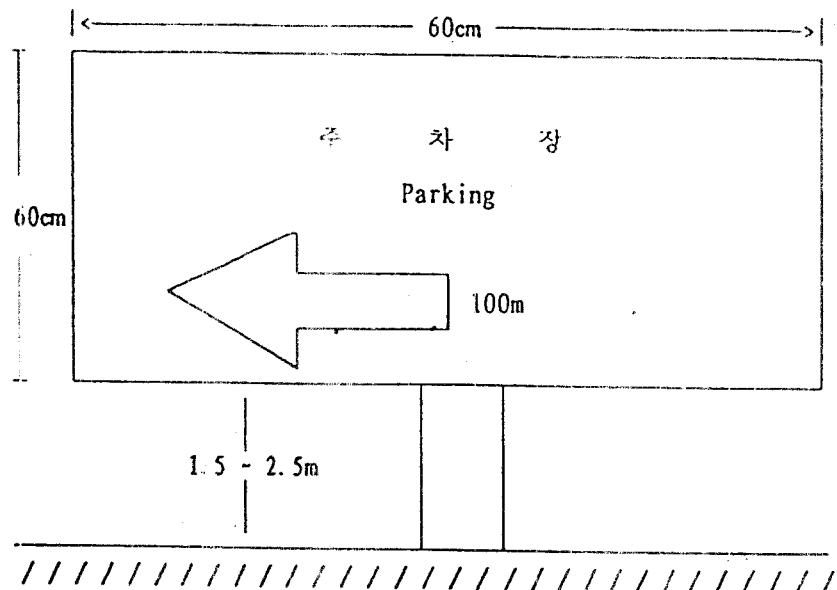
규 격 : 내부표지판 (가로30, 세로 25센티미터)

문자(가로 17, 세로 17센티미터)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판(제14조제3항 관련)



- 비 고 -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 색 채 : - 바탕 (청색)
 - 문자 및 기호 (청색)
-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3. 관련법규 등 (내용별첨)

주차장관련 신문보도 5건 전문

법률제5, 115호 주차장법중 개정법률('95.12.29) 전문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9조, 별표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9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전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전문